**진영 천주교회 공원 묘지 운영 규약**

**제 1조 명칭**천주교 마산교구 진영교회 공원 묘지(이하 공원 묘지) 관리 운영 규약이라 칭한다.

**제 2조 목적**  
 1. 공원 묘지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공원 묘역을 기획 조성하고

2. 기존 묘지 및 신규 입주하는 묘지를 관리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**제 3조 조직 구성** 1. 상기 제 2조를 달성하기 위해 진영교회 사목회 산하에 “공원 관리 운영위원  
 회(운영위원회)”와 “공원관리분과”을 둔다.

2. 공원 관리 운영위원회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 
 - 위원장 : 1인 (사목회장: 당연직)  
 - 위원 : 사목회 회장단, 각분과장 및 연령회장  
 - 감사 : 1인 (사목회 감사 : 당연직)

**제 4조 조직 운영**  
 1. **(절차)**공원관리분과의 제반 새로운 모든 사업 및 규약 변경은 운영위원회에  
 서 심의, 의결하고 본당주임 신부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사목회  
 시 보고해야 한다.  
 2. **(회의)**규약 변경 및 새로운 사업 승인은 운영위원회의 정기총회 시 논의, 의  
 결하고, 긴급사항은 회장단과 공원관리분과장의 발의로 임시 운영위원회를  
 통해 논의, 의결할 수 있다.  
 3. **(의결)**운영위원회의는 재적인원의 2/3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 
 의결한다.

**제 5조 임기**  
 운영위원회와 관리분과의 임기는 사목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필요 시 사목  
 회의를 통해 교체할 수 있다.

**제 6조 입주 자격**

1. 진영교회에 교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사망 전 1년동안 교무금(교회법 222조), 판공성사(교회법989조)및 신자의 의무를 다한 자
2. 수산, 생림, 한림 및 진례 교회의 교우 중 진영 교회에서 분리될 때 교적이 있던 자로써 사망 전 1년동안 각 해당 교회에서 교무금(교회법 222조), 판공성사(교회법989조)의 의무를 다한 자
3. 기 입주한 묘에 합장을 원하는 신자.
4. 상기 1,2항을 제외한 아래 사항과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선 운영위원회의 결과 및 본당 신부의 최종 결정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 
   ① 진영 교회에 교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기 1항을 요건을 충족하지  
    못한 자.

② 진영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는 신자의 가족(동일 세대)중 대세를 받은 자

③ 진영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는 신자로써 입주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자.  
 (영세입주자)

④ 진영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는 신자의 가족 중 신자의 묘를 타 묘지로부터  
 이장을 원하는 자

1. 상기 6조4항 ②,③,④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한 후 빈 자리로 남아 있는 자리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다.

**제 7조 입주 절차** 유가족은 사무장에게 입주 요청하고 공원관리분과장은 입주자격여부를 검토  
 하여 본당 신부님께 보고 후 결정한다.

**제 8조 입주 위치** 공원관리분과에서 정한 순서대로 입주하여야 하며, 임의의 장소를 지정하여  
 입주하여 한다. 단, 상기 6조4항에 따라 입주할 경우는 허용되는 장소 중 임  
 의 선정이 가능함.

**제 9조 입주금**  
 1. 운영위원회의 정기총회에서 묘지 운영 현황 및 실태를 고려하여 의결 운영한  
 다.  
 2. 입주금은 부칙에 따라 운영한다.

**제 10조 재정**  
 본 규약에 따라 조성된 자금은 제 2조에 근거한 것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  
 로는 사용하지 못한다.

부칙

1조. 입주금(2019.04월 현재)  
 1) 일반입주금 : 3,000,000원.  
 - 근거: 묘비석(1,000,000원),

2) 이장입주 및 대세자 입주금 : 2,000,000  
 - 근거: 묘비석(1,000,000원), 인건비(800,000원), 묘지발전기금(200,000원)

3) 영세자 입주금은 운영위원회 심의와 본당 주임 신부님의 결정으로 입주자  
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

4) 위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당 관례에 의한다.